휘닉스 스노우파크 스키시즌권 이용약관

제 1 조 (정의)

① "고객"이란 본 약관을 승인하고 휘닉스중앙평창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함)에 2019/2020 휘닉스 스노우파크 스키 시즌권(이하 "시즌권"이라 함)을 회사에 신청하여 발급받아 소지하는 모든 권종의 "시즌권" 소지자를 말합니다.

② "시즌권"이란 "회사"가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태기로 174에 소재한 휘닉스 평창(이하 "휘닉스 스노우파크") 내에서 스키 및 스노우보드 애호가들에게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③ "시즌권" 구입 고객들은 본 약관을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셔야 하며, 이 경우에만 "시즌권"의 효력이 유효합니다.

④ "회사"가 "시즌권"의 발급, 양도·양수, 환불 등을 위하여 운영하는 "시즌권데스크"는 아래 표와 같이 운영됩니다.

구 분	주소	운영 기간
서울데스크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7길 56(서소문동) M빌딩 3층 고객센터	19/20시즌 스키장 개장 전부터 폐장일까지
스키장데스크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태기로174 휘닉스 평창 스키하우스 1층	19/20시즌 스키장 개장일부터 폐장일까지

제 2 조 ("시즌권" 유효기간 및 적용)

① "시즌권"의 유효기간은 스키장 개장일부터 폐장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기간 경과 시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시즌권"으로 19/20 휘닉스 스노우파크 동계 시즌 중 "휘닉스 스노우파크" 리프트와 곤돌라를 이용 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지정하는 각종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시즌권"의 사용일수는 스키장 개장일로부터 60일로 하며, 이후 폐장일까지 기간은 서비스 기간으로 제공됩니다. 단 S시즌권의 경우 판매 시 명시한 사용시작일(스프링시즌 개장일)로부터 총 사용일수는 30일로 하며, 30일 이후부터 폐장일까지는 서비스기간으로 제공됩니다.

③ "시즌권" 이용자의 사용기간 중 이용횟수는 제한이 없으나 천재지변, 기상여건(강풍, 우박 등으로 인한 안전문제 발생), 입장객 초과시, 리프트 및 곤돌라 정비, 보강 제설, 국내외 스키 대회로 인한 슬로프 제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일부 또는 전 리프트/곤돌라 운행이 제한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가피성을 인정하여야 하며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④ "고객"은 "시즌권" 구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스키장에서 시행하는 검표작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회사가 지정하는 검표원은 상황에 따라 고글, 마스크, 헬멧 등의 안전 보호장비 탈착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시즌권"은 리프트/곤돌라 탑승이 가능하나 탑승 우선권은 없습니다.

⑤ '사용기간' 동안에는 본 조 제2항 소정의 사유가 없는 한 리프트와 곤돌라를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으나, '서비스기간' 중에는 기상여건 이나 슬로프상황, "회사"의 사정에 의해 그 이용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부가서비스에 대해서 "회사" 홈페이지 (phoenixhnr.co.kr/page/main/pyeongchang)를 통해 공지하며, 공지한 서비스의 내용은 사전통보 없이 기상 및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시즌권" 유효기간 중 부가서비스 부분에 대한 공지는 개별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제 3 조 ("시즌권" 이용자의 자격 및 "시즌권"의 관리)

① "시즌권"을 소지하지 않으면 "고객"의 권리를 행사할 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시즌권"을 소지하였을 경우에만 "회사"의 "고객"으로 인정 합니다.)

② "시즌권"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하여 "시즌권"을 소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 또는 "시즌권"이 손상 되어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전 항과 같습니다.

③ "고객"은 안전을 위하여 오픈된 슬로프 외 사용을 금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즌권"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4 조 ("시즌권" 부정사용 및 분실 신고)

① 본 조를 위반하여 "시즌권"을 부정사용 하다가 적발된 경우 부정사용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본인 또는 부정 사용한 자에게 귀속됩니다.

② "시즌권" 부정사용의 정의는 아래 각 호와 같습니다.

1. 시즌권을 시즌권자 본인 외 제 3자가 이용한 경우
2. 기준년도 회사가 발급한 시즌권 이외의 시즌권을 무단으로 이용한 경우
3. 시즌권의 이용기간 만료 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4. 제7조 제 1항의 양도 및 환불이 불가한 시즌권을 양도·양수하여 사용하는 경우
5. 타인의 개인정보 및 자회사의 정보를 도용하여 시즌권을 발급하는 경우.

③ "시즌권"은 부정사용이 확인되는 즉시 회수/폐기/사용정지 처리 되며, 부정사용의 귀책사유가 있는 자는 "시즌권" 구입가격에 해당하는 금액 및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한 혜택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이의를 "회사"에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④ "시즌권" 부정사용으로 "시즌권" 말소 후 재 구매를 원할 경우 현재 판매중인 상품에 한하여 구입이 가능합니다.

⑤ "시즌권" 부정사용으로 인한 사용정지, 회수 및 폐기 처리는 시즌권(고유번호)에 대한 폐기이며 잔여 사용기간과는 무관합니다.

⑥ 도난 및 분실된 "시즌권"을 이용한 경우 형법 제329조 절도죄와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적용되어 사법처리를 받게 되며, "시즌권"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하는 경우 고객은 그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⑦ "시즌권" 분실, 멸실의 경우 이용자는 반드시 시즌권 데스크에 분실 신고를 하여야 하며, 분실신고 이전에 부정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이용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⑧ 본 약관을 위반하여 "시즌권"을 불법적으로 양도, 판매하는 행위 및 부정판매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확인되는 즉시 해당 시즌권은 사용정지/회수/폐기 처리되며 해당 "시즌권"은 원상복구 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고객"은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 4 조의 2 (사설강습 제한)

① 회사는 안전한 스키 및 스노우보드 강습 문화 정착을 위해 "휘닉스 스노우파크" 내에서 회사가 주관·운영하지 않거나 회사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지 않고 진행하는 사설강습(이하 "사설강습")을 일체 허용하지 않습니다.

② "사설강습"을 진행하거나 이에 참여한 "고객"이 "사설강습" 중 발생하는 사고 등으로 인해 손해를 입을 경우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③ "고객"이 "사설강습"을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고객"의 "시즌권"은 회수/폐기/사용정지 처리 되고 제7조에 따라 환불됩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이의를 "회사"에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 5 조 ("시즌권"의 재발급)

① 회사는 "시즌권"을 분실하거나 심각한 훼손 또는 파손으로 인한 RFID인식 불가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시즌권"을 재발급 합니다. (그 외 어떠한 경우라도 시즌권을 재발급 하지 않습니다.)

② "시즌권"을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국가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를 제출하고 재발급에 소요되는 수수료 20,000원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 분실한 "시즌권"에 대해서는 분실 신고일로부터 분실한 "시즌권"의 회수 가능성을 감안하여 회사가 24시간 후 재발급하며 이후 해당 "시즌권"은 사용이 정지 되고, 추후 "시즌권"을 찾을 경우에도 해당 "시즌권"의 사용은 불가합니다.

제 6 조 ("시즌권"의 양도)

① "시즌권" 양도가능 권종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능 권종	불가능 권종
프라임 권종 (대인, 꿈나무, 실버, 골드) 스마트 권종 (양수자는 양도받는 시즌권 대상에 포함되어야 양도 가능)	자녀시즌권(무료혜택), 대학, 개인/법인회원, 교환권, 임직원 관련, 품의시즌권, 제휴/판촉시즌권, S 시즌권, 기업체 B2B, 임대업장 등

② "시즌권"의 양도·양수는 제1항의 양도 가능 권종을 소지한 시즌권자가 최초구입자인 경우 1회에 한하여 회사가 정한 발급수수료(30,000원)를 납입 후 가능하며, 스키장 개장일로부터 90일까지만 양도·양수가 가능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신, 질병(4주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 이민, 군입대, 유학 기타 "시즌권"의 사용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양수기간이 도과했다고 하더라도 발급수수료 30,000원을 부담하고, 예외적으로 "시즌권" 양도가 가능합니다. (단, 양도 가능 권종의 경우에 한함) 이 경우 "고객"은 불가능사유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즌권데스크"(1577-0069_# 6)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④ 양도 가능 권종을 구매한 "고객"이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수자는 "고객"에게 제공된 자녀1인 무료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또한 양도자에게 혜택으로 제공된 자녀1인 "시즌권"은 사용이 불가능하며 양도양수 또한 불가능합니다.

제 7 조 ("시즌권"의 환불)

① "시즌권" 환불 시에는 "시즌권" 이용자격이 상실되며, 반드시 "시즌권"을 지정된 반납처로 반납해야 합니다.

② "시즌권" 수령 전의 경우 시즌 개장 전에는 별도 수수료 없이 전액환불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스키장 개장일로부터 폐장일까지 "시즌권"을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폐장일까지에 한하여 "시즌권" 판매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후 환불이 가능하며, 폐장일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③ "시즌권" 수령 후 환불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장일 전 환불 요청 시 판매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불이 가능합니다.
2. 개장일을 포함한 개장일 후 사용 "시즌권"을 환불하는 경우에는 "시즌권" 판매금액에서 판매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선공제한 후, 해당 "시즌권"의 판매금액 기준 총 사용일수로 나눈 금액을 개장일로부터 환불요청일까지의 일수로 곱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 후 환불합니다.

   ※ **환불정산공식: 판매금액 – 위약금(판매금액의 10%) – {(판매금액/60일)x 개장일부터 청구일까지 기간]**

3. S시즌권의 환불 정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환불정산공식: 판매금액 – [위약금 8만원 + (리프트 주간권 정상가격의 70% x 구매일부터 청구일까지 기간)]**

④ 환불신청은 "시즌권데스크"로 "고객"이 "시즌권" 반납 및 환불 신청서 작성 후 서명날인 하여야 환불 접수가 완료되며, 최종사용일수는 신청 접수일까지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고객"이 우편으로 전달하는 경우 "시즌권데스크"로 신청서와 "시즌권"을 동봉하여 발송하셔야 하며, "시즌권데스크"에 도착하는 날을 접수일로 합니다.

⑤ "회사"의 콘도(휘닉스중앙제주 주식회사 휘닉스 제주 섭지코지 회원 포함) 회원 및 제휴서비스에 따라 무료/할인가로 제공되는 시즌권, 경품으로 제공하는 시즌권, 판촉행사용 시즌권 등의 구입비용이 없는 시즌권은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제 8 조 (본인확인을 위한 지문등록)

① "회사"에서는 고객의 권익보호와 부정사용 방지를 위하여 "고객"의 개인정보제공 동의 하에 RFID Gate시스템 운영에 따른 고객의 지문 정보 및 사진 수집이 불가피하며, "고객"은 지문정보 등록 및 스키장 이용시에 지문 무인 인증기에 본인확인 절차를 이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고객"이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시지 않는 경우, "시즌권"의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합니다.

② "시즌권" 교부 후 지문 최초 등록시 반드시 이용자 본인의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 주셔야 "시즌권" 이용이 가능하며, 제7조의 시즌권 양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후 지문의 변경은

불가 합니다. 이용자 본인의 지문 정보가 아닌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본 약관 제5조 제3항에 의해 처리됩니다. "회사"는 운영정책상 이용시간에 따라 상기 본인확인 절차를 추가로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제 9 조 (변경승인)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또는 약관을 변경할 경우 "회사"는 그 내용을 "회사"의 홈페이지(http://phoenixhnr.co.kr/pyeongchang)를 통해 적용 예정일로부터 14일 전까지 "고객"에게 공지하기로 하며, 고객이 적용 예정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때에는 변경 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10 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11 조 (위반시의 책임)

"회사"와 "고객"은 본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각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 12 조 (관할법원)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 관할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 13 조 (기타)

① 리프트나 곤돌라 이용 시 본인 부주의로 시즌권을 소지하지 못한 경우, "회사"에서는 재발급 및 무료 리프트권 제공 또는 할인 등의 의무가 없으며, "고객"은 이를 "회사"에 요청할 수 없습니다.

② "시즌권" 구입시 "고객"이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거나 공문서(주민등록등본 등)를 위조한 경우, "고객"은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습니다.

③ "회사"에서 제공하는 자녀시즌권(무료혜택)에 포함되는 소인의 기준은 13세 이하 출생자 (주민등록번호 기준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 규정합니다.

④ "시즌권" 발급시 첨부되는 사진 이미지의 규격은 어깨 이상 썬글라스, 모자, 고글 등의 탈의로 본인 식별이 가능한 이미지여야 합니다. 단, 발급시 이미지가 부적합한 경우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⑤ 19/20 "시즌권"에는 시즌 보험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⑥ 익스트림파크 이용시 고객의 과실로 인해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⑦ 본 약관은 2019년 9월 9일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